

특별조치법 제 45 조 제 1 항에 근거하여 현민에 대해 생활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출 자제를 요청합니다.

■구역: 미야기현 전역

■기간: 2020 년 4 월 17 일부터 5 월 6 일까지

· 의료기관으로의 통원, 식료·의약품·생필품의 구입, 필요한 직장으로의 출근, 옥외에서의 운동이나 산책 등, 생활 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, 원칙으로서 외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합니다.

· 부득이 외출하는 경우에도 '밀폐' '밀집' '밀접'을 피하는 행동을 철저히 할 것, 자주 손 씻기, 마스크 착용, 손이 닿는 물건이나 부위의 소독 등을 실시하여 감염 예방에 힘쓰는 동시에 물건구입은 혼자 가는 등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수나 시간의 외출, 재택근무(텔레워크)나 시차 출근 등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· 특히 번화가에서의 접대를 수반하는 음식점 등에 대해서는, 연령등을 불문하고, 강하게 자숙을 요청합니다.

· 또 연휴기간에는 불요불급한 귀성이나 여행등 현을 넘어 이동하는 것은 자제하도록 요청합니다.

특별조치법 제 24 조 제 9 항에 근거해, 이벤트 주최자에 대해, 행사 개최의 자숙을 요청합니다.

■구역: 미야기현 전역

■기간: 2020 년 4 월 17 일부터 5 월 6 일까지

· 실내외를 불문하고, 복수의 사람이 참가하여 밀집상태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이벤트, 파티등의 개최에 대해서, 자숙을 요청합니다.

<구체적 예>

파티·물산전·식전·강연회·연수회·스포츠행사 등

※생활 유지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감염 예방·확대 방지책 철저화